

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9. 11. 27.(수) 10:32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한상혁 위 원 장
김석진 부위원장
허 욱 상임위원
표철수 상임위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김창룡 상임위원 (1인)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전차 회의록,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별 확인을 거쳐 차기회의에서 접수기로 함

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⑥ 의결사항

가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(2019-58-306)

- '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'에 대해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,

- '19년 12월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이씨엔올산중양방송(주) 재허가에 대한 사전 동의 요청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조건에 아래의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<재허가 사전동의 관련>

구분	내용
재허가조건 추가	<p><재무적 건전성></p> <p>· 제이씨엔올산중양방송(주)는 재허가 심사 시 제출한 3년간 부채비율 계획(2020년: 301.95%, 2021년: 242.62%, 2022년: 190.54%)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, 재허가일 이후 매 반기마다 반기말 기준 부채비율을 산정하고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당해 반기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후략)</p>
재허가조건 명확화	<p><사업계획서 이행></p> <p>· 제이씨엔올산중양방송(주)는 방송의 공익성·공적책임 실현 ... 등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단, 재허가조건이 부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허가조건이 우선한다.</p>
권고사항 부과	<p>· 제이씨엔올산중양방송(주)는 8VSB 상품에서 공익·장애인복지채널을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

※ 밑줄이 추가된 내용

나. 2018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 (2019-58-307)

- o '2018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'에 대해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,
-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8개 방송사업자(367개 방송국)를 대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방송평가위원회(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)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함

※ 참고사항

- 지상파(TV, 라디오, DMB), SO, 위성방송, 종편PP, 보도PP, 홈쇼핑PP의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의 내용·편성·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실시
- 방송평가는 매체별로 평가기준, 평가항목 등이 상이하므로 다른 방송매체 간 비교는 적절치 않으며,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

- 2018년도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(www.kcc.go.kr)에 게재되며,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·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 등

7] 보고사항

가. CJ헬로(주)와 KT(주)간 체결한 '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'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에 관한 사항

- 'CJ헬로(주)와 KT(주)간 체결한 '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'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에 관한 사항'에 대해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원안대로 접수함

※ 관련 주요내용

- 제2019-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CJ헬로(주)와 KT(주)간 체결한 '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'(이하 협정서)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 건을 심의 하고 양 사업자에게 협정서 개정안 협의를 요청하였고, 이에 양 측은 위원회 논의 사항을 반영하여 협정서를 개정할 것을 합의하고 '재정신청 취하서'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(11. 22)
- 다만, 본 재정 건 종결과 병행하여 협정서 제35조 제1항에서는 협정서 제34조 2항 위반 시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우려되어, 양 당사자가 협정서 제35조 제1항을 재정 신청의 대상에 포함 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해지 이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할 계획

8]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12월 4일(수)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23)